

『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9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9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9월 26일

제2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박 종 우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는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과 핵심기술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 의료기기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전자의료 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하고 있음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7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·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출연 개요

- (1) 대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대 표 : 남유진
- (3) 소 재 지 :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
- (4) 출연예정액 : 금600,000천원

※ 6차년도('16.9월~'17.8월) 소요예산 중 미확보 금액

○ 주요 사업

- (1) 사 업 명 :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
- (2) 사업기간 : 2011년 9월 ~ 2017년 8월 (6년간)

※ 구미지식산업센터 조성으로 사업기간 '18.12월로 연장예정

- (3)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 (금오테크노밸리 IT의료융합기술센터)
- (4) 총사업비 : 1,213.5억원 [국비(지특)820, 도비105, 시비243, 민자45.5]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			
	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6년이후
계	1,213.5	87.84	119.12	151.18	194.93	277.05	118.26	265.12
국 비	820	20.00	58.87	95.60	122.60	215.00	100.00	207.93
도 비	105	10.00	22.50	24.00	24.50	14.00	10.00	
시 비	243	55.00	30.00	26.00	41.70	40.30	8.00	42.00
기술원	2		0.54	0.44	0.51	0.25	0.26	
민 자	43.5	2.84	7.21	5.14	5.62	7.5		15.19

- (5) 추진주체 : 산업통상자원부, 경상북도, 구미시
- (6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7) 사업내용

- IT의료융합기술센터(본관동, 연구실험동) 및 공용장비 구축
- 구미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국내·외 기업, 연구소 유치
- IT융합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

(8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0. 11 : 예비타당성 심사 및 국책사업확정
- 2011. 9 : 주관기관 선정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
- 2011. 11 : 센터부지매입 완료(금오테크노밸리 內 4,100m²)
- 2013. 8 : IT의료융합기술센터 리모델링(연구실험동) 준공
- 2014. 10 : IT의료융합기술센터 신축(본관동) 준공
- 2015. 7 : 구미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
- 2017. 2 : 구미지식산업센터 건축 착공
- 2018. 12 : 구미지식산업센터 준공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,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-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기 타 : 주요사업 실적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
출연 동의안은

- 보수적인 시장구조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전자의료기기사업의 발전을 위해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,

- 구미의 세계적인 IT 생산기술 기반과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의 동력을 접목하여 전통적인 IT제조 산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